

실험실습기자재선정위원회규정

제정 2018.06.01 1차 개정 2021.08.09
2차 개정 2023.01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실험실습 기자재 선정에 관한 실험실습기자재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생의 실험실습수업에 따른 실험실습기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책임과 권한) 위원회는 실험실습기자재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한다.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5명 내외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1.16.>

②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21.08.09.>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실험실습기자재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
2. 실험실습기자재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
3.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우선순위 결정
4. 실험실습기자재 공동활용 검토
5. 실험실습기자재 사용의 문제점 검토
6. 기증기자재에 대한 검토 및 심의
7. 각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과정은 총 10시간 이상 되도록 편성 <신설 2023.1.16.>
8. 기타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제반 사항 <개정 2023.1.16.>

제6조(자료요구) ①위원회의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학(부)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삭제 <2023.1.16.>

제7조(소집 및 의사결정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서 명시 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